

제 3 부
투자 · 서비스 및 관련사항

제 10 장
투 자

제1절 - 정의

제10.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분쟁 투자자라 함은 제3절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분쟁 당사자들이라 함은 분쟁 투자자와 분쟁 당사국을 말한다.

분쟁 당사국이라 함은 제3절에 따라 청구를 제기당한 당사국을 말한다.

분쟁 당사자라 함은 분쟁 투자자 또는 분쟁 당사국을 말한다.

기업이라 함은 제2.1조에서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사를 말한다.

일방 당사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고 조직된 기업 및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며 그 영역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지사를 말한다.

금융기관이라 함은 소재하고 있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일방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G7 통화라 함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또는 미국의 통화를 말한다.

ICSID라 함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말한다.

ICSID협약이라 함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투자라 함은 자본이나 그 밖의 자원의 투자 약속, 이득이나 이윤의 기대 또는 위험의 인수와 같이 투자로서의 특성을 지니면서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한다. 투자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기업,
- 나. 주식, 증권 및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참여,
- 다. 채권, 회사채, 대부 및 그 밖의 기업의 차입수단,
- 라. 토기, 건설, 경영, 생산, 양허 또는 수익배분 계약을 포함한 계약상의 권리,
- 마. 상업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성립되거나 유지되는 금전에 대한 청구권,
- 바. 지적재산권,
- 사.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창출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양허·면허·인가 및 허가와 같이 국내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그리고
- 아. 그 밖의 유·무형 자산, 동산·부동산 및 임차권, 저당권, 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관련 재산권.

그러나, 다음은 투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 자. 전적으로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청구
 - (1)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의 공민이나 기업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의 기업에 대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상업 계약, 또는
 - (2) 무역금융과 같이 상업적 거래와 관련된 신용의 제공, 그리고
- 차. 사법 또는 행정 소송 상태에 들어간 주문.

일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라 함은 일방 당사국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투자를 말한다.

일방 당사국 투자자라 함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투자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일방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국영기업, 공민 또는 기업으로서 자본을 투입하거나 적용가능한 경우 투자를 시행중이거나 이미 시행한 자를 말한다.

비당사국 투자자라 함은 당사국의 투자자가 아닌 투자를 말한다.

뉴욕협약이라 함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된 해외중재판정의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한다.

사무총장이라 함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이전이라 함은 송금과 국제지불을 말한다.

중재판정부라 함은 제10.24조 또는 제10.30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를 말한다.

무역관련투자조치에관한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무역관련투자조치에관한협정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이라 함은 1976년 12월 15일 유엔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제2절 - 투자

제10.2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 가.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 나. 타방 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내의 투자, 그리고
- 다. 제10.7조와 제10.18조와 관련하여, 자국 영역내의 모든 투자.

2. 이 장은 이 협정 발효일 당시의 기존의 투자 및 발효일자 이후 이루어 졌거나 획득되어진 투자에 적용된다.

3. 이 장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일방 당사국 영역내의 금융기관에 대한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및 이들의 투자와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 나.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비롯되는 청구 또는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제기된 청구.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당사국이 법집행,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보장 또는 보험, 사회복지, 공교육, 공공 직업훈련, 보건 및 아동보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법집행,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보장 또는 보험, 사회복지, 공교육, 공공 직업훈련, 보건 및 아동보호와 같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상업적 기초 위에서 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하여 제공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에는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0.3조 내국민대우

1.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투자자에게 투자의 설립, 취득, 확장, 경영, 영업, 운영, 판매 또는 다른 처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여건 하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의 설립, 취득,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및 판매 또는 다른 처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여건 하에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10.4조 최혜국대우

1.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행해지거나 실현된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이러한 투자를 행하거나 실현한 타방 당사국 투자자에 대하여, 어떠한 비당사국 투자자에 의해 행해지거나 실현된 투자나 이러한 투자의 투자자에게 동일한 여건하에서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일방 당사국이 자국이 당사국인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 또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지역경제기구 등을 설립하는 협정에 의해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나 비당사국 투자자에 대해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나 타방 당사국 투자자에게 그러한 대우를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이 제10.9조제1항 및 제2항에 부합하여 비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해 추가적인 자유화를 실현한 경우, 그러한 추가적인 자유화에 의해 부여된 대우에 관하여 호혜적인 기초 위에서 그리고 권리와 의무간의 전반적인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상기회를 타방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제10.5조 대우의 최저기준

1.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투자자와 이들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국제관습법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최저대우기준에 합치하는 대우를 부여한다.
2. 제1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완전한 보호와 안전”의 개념은 국제관습법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최저대우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것에 추가하거나 그 이상의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은 이 조에 대한 위반으로 되지 아니한다.

제10.6조 손실 및 배상

전쟁이나 그 밖의 무력 충돌, 국가 비상사태, 폭동, 반란, 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 상황에 기인한 투자 손실과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전투행위로 발생한 것이거나 긴급피난에 의해 요구된 것이 아닌 재산의 징발이나 파괴로 야기된 손실을 입은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해 타방 당사국은 원상회복, 보상, 배상 또는 다른 형태의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자국의 투자자나 어떠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중 당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10.7조 이행요건

1. 어느 당사국도 자국 영역내에 있는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 취득, 확장, 경영, 영업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떤 요건도 부과 또는 강요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어떠한 약속 또는 의무를 강요해서도 아니된다.
 - 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정 수준이나 비율의 수출,
 - 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산품 사용 의무의 달성,
 - 다. 자국 영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 이용 또는 특혜 부여 또는 자국 영역내의 인으로부터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 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입량이나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당해 투자와 관련된 외화유입액과 연계,

- 마. 투자에 의해 생산 또는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국 영역내 판매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당해 투자에 의한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관련시킴으로써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국 영역내 판매를 제한,
- 바. 자국 영역내의 인에게 기술, 생산공정 또는 다른 일신전속적 지식을 이전. 다만, 경쟁법 위반 혐의를 시정하거나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 행정재판소 또는 경쟁당국이 요건을 부여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생산하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정지역이나 세계시장에 대한 배타적인 공급자로서 행동.

2. 투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강, 안전, 또는 환경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는 제1항 바호에 불합치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제10.3조와 제10.4조가 적용된다.

3. 어느 당사국도 자국 영역내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혜택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을 다음의 요건 준수를 조건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산품 사용의무의 달성,
- 나. 자국 영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구매, 이용, 또는 특혜 부여 또는 자국 영역내 생산자로부터의 상품 구매,
- 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입량이나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관련된 외화유입액과 연계, 또는
- 라. 투자에 의해 생산 또는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당해 투자에 의한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관련시킴으로써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국 영역내 판매를 제한.

4. 제3항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당사국이 자국 영역내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혜택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을 생산지 지정, 서비스 제공, 인력 고용 및 훈련, 특정 설비의 설립 또는 확장, 또는 연구개발 실행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조와 무역관련투자조치에관한협정이 배치되는 경우 그 배치되는 한도내에서 후자가 우선한다.

5. 제1항과 제3항은 그 항에서 규정한 요건 이외의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그러한 조치들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하게 적용되거나 국제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 나호나 다호, 또는 제3항 가호나 나호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당사국이 환경 조치를 포함하여 다음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이 협정의 규정에 불합치하지 않는 법규에 대한 준수의 확보,
-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 또는
- 다. 고갈 가능한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

7. 다음 조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제1항 가, 나 및 다호와 제3항 가 및 나호는 수출 증대 및 대외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나. 제1항 나, 다, 바 및 사호와 제3항 가 및 나호는 일방 당사국이나 국영기업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 제3항 가 및 나호는 수입 당사국이 특혜관세나 특혜쿼터를 위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8. 이 조는 사적 당사자간의 약속, 의무 또는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0.8조 고위 경영자 및 이사회

1. 어느 당사국도 타방 당사국 투자자가 투자한 자국 기업의 고위 경영직에 특정 국적의 개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투자자가 투자한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그 위원회의 구성원 다수가 특정 국적을 소지하거나 그 당사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이 당해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9조 유보 및 예외

1. 제10.3조, 제10.7조와 제10.8조는 다음 각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다음에 의해 유지되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
 - (1) 부속서 I의 양허표에 규정된 국가 차원의 일방 당사국, 또는
 - (2) 지방정부,
-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개선, 또는

- 다. 개정직전의 조치의 비합치성과 비교하여 그 개정으로 인해 당해조 치의 제10.3조, 제10.7조와 제10.8조와의 비합치성이 증대되지 아니 하는 한도 내에서의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2. 제10.3조, 제10.7조 및 제10.8조는 부속서 2의 양허표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어느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느 당사국도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채택되고 부속서 2의 자국의 양허 표에 포함된 조치를 근거로,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국적을 이유로 당해 조 치가 시행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처분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 한다.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당사국이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그리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후원 하에서 체결된 다른 조약들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협정하에서의 권리와 의무로 부터 일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제10.3조 및 제10.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어느 당사국 또는 국영기업에 의한 조달, 또는
- 나. 정부 지원 용자·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일방 당사국 또는 국영 기업에 의하여 제공된 보조금이나 무상지원.
6. 제10.3조, 제10.7조 및 제10.8조는 부속서 10.9.6에 규정된 자발적이고 특 수한 투자체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0.10조 향후 자유화

이 협정 발효 후 자유무역위원회에 의해 매 2년마다 개최될 향후 협상을 통하여, 양 당사국은 호혜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전반적인 균형 을 확보하면서 제10.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보된 잔존 제한조치의 감축 또는 철폐에 도달하기 위하여 추가 자유화에 참여한다.

제10.11조 이전

1. 부속서 10.11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한 모든 송금이 자유롭고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초기 자본 및 투자의 유지나 증대를 위한 추가분,
- 나. 투자에서 비롯되는 이윤, 배당금, 이자, 자본이득, 로열티 지불, 경영 지도비,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현물수익 및 그 밖의 금액,
- 다. 투자의 전체 또는 부분적 매각, 또는 부분적이거나 완전한 청산에서 비롯되는 대금,
- 라. 융자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을 포함하여, 투자자 또는 그의 투자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불,
- 마. 제10.13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 바. 제3절에 따라 발생하는 지불.

2. 각 당사국은 송금이 송금 당일 유효한 외환시장 환율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거나 태환가능한 통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어느 당사국도 자국 투자자에게 타방 당사국 영역내의 투자에서 파생하거나 그에 귀속될 수 있는 소득, 수익, 이윤 또는 다른 금액을 송금하도록 요구하거나, 송금하지 아니하는 자국 투자자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해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 가. 파산, 지불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 나. 유가증권의 발행, 유통 또는 거래,
- 다. 형사 범죄,
- 라. 통화나 그 밖의 지불수단의 이전에 대한 보고, 또는
- 마. 소송절차에서의 판결의 이행 확보.

5. 제3항은 일방 당사국이 제4항 가호 내지 마호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하여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해 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은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이 협정에서 현물수익의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12조 예외 및 긴급제한조치

1. 예외적인 경우에 양 당사국간 대금 지불이나 자본 이동이 어느 일방 당사국의 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엄격히 필요한 조치에 한해 자본이동에 대한 긴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제한조치의 적용은 정식 재도입 절차를 밟아 연장할 수 있다.

2. 긴급제한조치를 채택하는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철회를 위한 일정을 제시한다.

제10.13조 수용 및 보상

1. 어느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 영역내의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유화 또는 수용하지 아니한다.

- 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 나. 비차별 원칙에 기초하여,
- 다. 적법절차 및 제10.5조제1항에 따라, 그리고
- 라.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보상을 지급.

2. 보상은 수용이 행해지기 직전, 즉 수용된 투자의 수용일 직전의 공정시장가격에 상응하여야 하며, 수용의도가 사전에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격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아니한다. 가격산정 기준은 계속기업가치, 유형자산의 세무신고액을 포함한 자산가치, 그리고 적절한 경우 공정한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그 밖의 기준을 포함한다.

3. 보상은 지체없이 지급되고 완전히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상의 지급이 G7 국가의 통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보상은 당해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자부터 실제 지급일자까지의 이자를 포함한다.

5. 당사국이 G7 통화 이외의 통화로 보상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지급일에 지불된 금액을 지급일 현재 시장환율에 따라 G7 통화로 환산한 금액은 수용일자에 지불되어야 하는 보상액을 수용일자 현재 시장환율에 따라 당해 G7 통화로 환산한 액수 및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였을 당해 G7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

6. 보상은 제10.11조에 규정된 바대로 지급 시점에서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7. 이 조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 또는 지적재산권의 취소, 제한이나 생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이러한 발동, 취소, 제한 또는 생성이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합치함을 전제로 한다.

제10.14조 대위변제

1. 일방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타방 당사국 영역내의 자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와 관련된 비상업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계약이나 어떠한 형태의 재정적 보증을 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계약이나 재정적 보증하에서 당해 당사국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지급을 한 경우, 타방 당사국은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대위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해 당사국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권리를 인정한다.

2. 일방 당사국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자국 투자자에게 지급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청구를 인수한 경우, 그 투자자는 지급을 한 당사국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승인받지 않는 한 타방 당사국에 대해 그러한 권리나 청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제10.15조 특별형식과 정보요건

1. 제10.3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과 관련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특별 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이 이 장에 따라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 보호를 실질적으로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2. 제10.3조나 제10.4조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은 단지 정보수집 또는 통계상의 목적으로 자국 영역내의 타방 당사국 투자자와 그 투자에 대해 투자에 관한 통상적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은 당해 투자자나 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비밀 영업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당사국이 자국법을 공평하고 선의로 적용하여, 정보를 달리 입수 또는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0.16조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장과 이 협정의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되는 한도내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2.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내로의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유가증권이나 다른 형태의 재정적 보증의 기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 장을 그러한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 이 장은 기탁된 유가증권 또는 다른 재정적 보증에 대해 일방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에는 적용된다.

제10.17조 혜택의 부인

1.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기업인 그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비당사국의 투자자가 그 기업을 소유 또는 통제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 가. 그 일방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 나. 그 일방 당사국이 비당사국에 대하여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 또는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되게 되면 그 조치를 위반하거나 우회하게 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게 되는 경우.
2. 제17.4조 및 제19.4조에 따른 사전 통지 및 협의 의무를 준수하면서, 일방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투자자가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그 기업이 타방 당사국의 법에 의해 구성되거나 조직되었으나 그 영역내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타방 당사국의 기업 투자자 및 이러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10.18조 환경 조치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당사국이 자국 영역내에서의 투자활동이 환경문제를 민감하게 고려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그 이외에는 이 장과 합치되는 조치를 채택, 유지 또는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국내 보건, 안전 또는 환경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일방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 획득, 확대 또는 유지를 장려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를 철회 또는 완화하거나, 또는 철회 또는 완화할 것을 제안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그러한 장려를 타방 당사국이 제안했다고 일방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그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양 당사국은 그러한 장려를 회피할 목적으로 협의한다.

제3절 – 일방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 투자자간의 분쟁해결

제10.19조 목적

1. 제19장에 규정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이 절은 국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양 당사국 투자자간의 동등한 대우 및 공정한 재판을 통한 적법 절차를 모두 보장하는 투자분쟁 해결 제도를 수립한다.

제10.20조 일방 당사국 투자자 자신에 의한 청구

1. 부속서 10.20에 따라,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는 타방 당사국이 제2절 또는 제14.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또한 투자자가 그러한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2. 투자자는 주장된 위반 및 손실이나 손해를 입은 사실을 투자자가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21조 기업을 대신한 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청구

1. 부속서 10.20에 따라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타방 당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타방 당사국이 제2절 또는 제14.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기업이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2. 투자자는 주장된 위반 및 기업이 손실이나 손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기업이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기업을 대신한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3. 투자자가 이 조에 따른 청구를 제기하고, 그 투자자 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지배권이 없는 투자자가 이 조에 따른 청구를 야기한 동일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를 제10.20조에 따라 제기하였으며, 둘 또는 그 이상의 청구가 제10.24조에 따른 중재에 제출될 경우, 제10.30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분쟁 당사자의 이해가 저해된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청구들을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4. 투자는 이 절에 따른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22조 협의와 협상을 통한 청구의 해결

분쟁 당사자는 협의나 협상을 통한 청구의 해결을 우선 시도해야 한다.

제10.23조 청구의 중재회부 의사 통지

분쟁 투자자는 청구를 중재에 회부하기 최소 90일 전에 청구의 중재회부 의사를 서면으로 분쟁 당사국에게 통지하며, 그러한 통지서는 다음을 명시한다.

- 가. 분쟁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제10.21조에 따른 청구를 제기 할 경우에는 기업명 및 주소,
- 나.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협정의 규정 및 다른 모든 관련 규정,
- 다. 청구의 쟁점 및 사실 근거, 그리고
- 라. 요청하는 구제조치 및 청구된 손해 추정액.

제10.24조 청구의 중재회부

1. 청구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경과하였다며 분쟁 투자자는 다음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 가. 분쟁 당사국 및 투자자의 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일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 나. 분쟁 당사국 및 투자자의 당사국 중 하나만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회원국일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 또는
- 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

2. 이 절에 의해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적용가능한 중재규칙들이 중재에 적용된다.

제10.25조 청구의 중재회부에 대한 전제조건

1. 분쟁 투자자는 다음에 한하여 제10.20조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 가. 투자자 및 그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기업 모두가 분쟁 당사국의 행정재판소 또는 법원에 동일한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투자자가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중재에 동의할 것, 그리고
- 다.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타방 당사국의 기업의 이익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의 배상 청구인 경우, 투자자 및 당해 기업은 제10.20조에서 언급된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분쟁당사국의 조치에 대해 그 당사국 법에 따른 어떠한 행정재판소나 법원 또는 다른 분쟁해결절차에서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를 포기할 것. 다만, 분쟁 당사국 법에 의한 행정재판소나 법원에 제기되며 손해배상 지급을 포함하지 않는 금지명령, 확인 판결 또는 그 밖의 특별 구제를 위한 절차는 제외된다.

2. 분쟁 투자자는 투자자 자신과 당해 기업 모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제10.21조에 따른 청구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 가. 투자자 및 그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기업 모두가 분쟁 당사국의 행정재판소 또는 법원에 동일한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중재에 동의할 것, 그리고
- 다. 제10.21조에서 언급된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분쟁당사국의 조치에 대해 그 당사국 법에 따른 어떠한 행정재판소나 법원 또는 다른 분쟁 해결절차에서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를 포기할 것. 다만, 분쟁 당사국 법에 따른 행정재판소나 법원에 제기되며 손해배상 지급을 포함하지 않는 금지명령, 확인 판결 또는 그 밖의 특별 구제를 위한 절차는 제외된다.

3. 관련된 분쟁 투자자가 당사국 법에 따른 어떠한 행정재판소나 법원에 해결을 위한 분쟁을 제출한 이후에는 그 투자자는 이 절에 따른 중재에서 당해 조치가 제10.20조나 제10.21조에서 언급된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4. 이 조에 의해 요구되는 동의와 포기는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분쟁 당사국에 전달되며, 청구의 중재회부서에 포함된다.

5. 분쟁 당사국이 분쟁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배권을 박탈한 경우에 한하여,

- 가. 제1항 다호 또는 제2항 다호에 따른 기업의 권리포기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나. 제10.24조제1항 나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0.26조 중재에 대한 동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청구의 중재회부에 동의한다.

2. 제1항에 의해 이루어진 동의 및 분쟁 투자자에 의한 청구의 중재회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가. 양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센터의 관할권)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 그리고
- 나.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

제10.27조 중재위원의 수와 임명방법

제10.30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 당사자는 1인의 중재위원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위원은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제10.28조 당사국이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분쟁당사자들이 의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중재판정부 구성

1. 사무총장은 이 절에 따른 중재를 위한 임명권자 역할을 한다.

2. 제10.30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를 제외하고, 청구가 중재에 회부된 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재판소가 구성되지 아니할 경우, 사무총장은 일방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중재위원 또는 중재위원들을 임명한다. 다만,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다.

3. 의장이 분쟁 당사국의 공민 또는 분쟁투자자의 당사국 공민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사무총장은 제4항에서 언급된 의장 명부에서 의장을 임명한다. 그러한 의장이 부재할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위원 패널에서 어느 일방 당사국 공민이 아닌 자를 의장으로 임명한다.

4. 이 협정 발효일에 양 당사국은 제10.24조에 언급된 협약 및 규칙상 자격에 부합하고, 국제법 및 투자문제에 경험이 있으며 어느 일방 당사국의 공민이 아닌 30명의 의장 명부를 작성하여, 그 이후로 이를 유지한다. 명부의 구성원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제10.29조 중재위원 임명 합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9조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 제3부 제7조의 목적상, 그리고 제10.28조제3항에 기초하거나 국적 이외의 이유로 인한 중재위원에 대한 반대를 저해함이 없이,

- 가. 분쟁 당사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 각 개별위원의 임명에 합의한다.
- 나. 제10.20조에 언급된 분쟁 투자자는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위원의 임명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회부하거나 계속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 다. 제10.21조제1항에 언급된 분쟁 투자자는 분쟁 투자자 및 그 기업이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위원의 임명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회부하거나 계속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30조 병합

1. 이 조에 따라 설치되는 중재판정부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라 설치되고, 이 절에 의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2.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공통의 법 문제 또는 사실 문제를 가진 복수의 청구들이 제10.24조에 따른 중재에 회부되었다고 확신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청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에 의해,

- 가. 그러한 청구들의 전부 또는 부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며 판정할 수 있다. 또는
- 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정이 다른 청구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에 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구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고 심리하며 판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구하는 분쟁 당사자는 사무총장에게 중재판정부의 설치를 요청하고 다음을 요청서에 명시한다.

- 가. 명령의 대상이 되는 분쟁 당사국의 명칭 또는 분쟁 투자자의 성명,
- 나. 구하는 명령의 내용, 그리고
-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4. 분쟁 당사자는 요청서 사본을 명령의 대상이 되는 분쟁 당사국 및 분쟁 투자자에게 전달한다.

5. 요청서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사무총장은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를 설치한다. 사무총장은 제10.28조제4항에 언급된 명부에서 의장을 임명한다. 그러한 의장이 부재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위원 패널에서 어느 일방 당사국의 공민이 아닌 의장을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제10.28조제4항에 언급된 명부에서 다른 두 명의 구성원을 임명하고, 그 명부에서 임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패널에서 임명하며, 그 패널에서 임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재량으로 임명한다. 한 명의 위원은 분쟁 당사국의 공민이고, 다른 한 명의 위원은 분쟁 투자자의 당사국의 공민이어야 한다.

6.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 경우, 제10.20조나 제10.21조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회부하였으나 제3항에 따른 요청서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분쟁 투자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에 그 청구가 포함될 것을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청서에 다음을 명시한다.

- 가. 분쟁 투자자의 성명과 주소,
- 나. 구하는 명령의 내용, 그리고
-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7. 제6항에서 언급된 분쟁 투자자는 제3항에서 작성된 요청서에 성명이 기재된 분쟁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요청서 사본을 전달한다.

8. 제10.24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는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를 판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9.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제2항에 따른 자신의 판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10.24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절차를 이미 종료하지 않은 한, 분쟁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중재판정부가 절차를 중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0.31조 통지

1. 분쟁 당사국은 다음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무국에 그 사본을 전달한다.

-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중재요청서,
-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 제3절제2조에 따라 작성된 중재통지서, 또는
- 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라 통보된 중재통지서.

2. 분쟁 당사국은 제10.30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요청서 사본을 다음 기간 내에 사무국에 전달한다.

- 가. 분쟁 투자자에 의하여 작성된 요청서일 경우, 요청서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 나. 분쟁 당사국에 의하여 작성된 요청서일 경우, 요청서 작성일자로부터 15일 이내.

3. 분쟁 당사국은 제10.30조제6항에 따라 작성된 요청서 사본을 그 요청서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사무국에 전달한다.

4. 사무국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서류에 대한 등록 대장을 유지한다.

5. 분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게 다음 문서를 전달한다.

- 가. 중재 청구가 제출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에 회부된 청구의 서면통지, 그리고
- 나. 중재에 제출된 모든 변론서의 사본.

제10.32조 당사국의 참여

분쟁 당사자들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문제에 관한 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33조 문서

1. 당사국은 다음의 사본을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 비용은 이를 요청하는 당사국이 부담한다.

- 가.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증거, 그리고
- 나. 분쟁 당사자들의 서면 주장.

2.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국은 분쟁 당사국과 같은 입장에서 그 정보를 취급한다.

제10.34조 중재장소

양 분쟁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다음에 따라 선택된, 뉴욕협약의 가입국인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중재를 실시한다.

- 가. 중재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을 따른 것일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 또는
- 나. 중재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을 따를 경우 동 규칙.

제10.35조 관할법

1. 이 절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분쟁의 쟁점을 결정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자유무역위원회의 해석은 이 절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제10.36조 부속서의 해석

- 1.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조치가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2에 규정된 유보나

예외의 범위내에 있다고 분쟁 당사국이 항변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그 사안에 대한 해석을 자유무역위원회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그 요청이 전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해석을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제출한다.

2. 제10.35조제2항에 추가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회의 해석은 중재판정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만약 위원회가 60일 이내에 해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사안을 결정한다.

제10.37조 전문가 보고서

중재판정부는,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의해 승인될 경우의 다른 유형의 전문가 임명을 저해함이 없이,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분쟁 당사자들이 승인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스스로의 뜻의에 의하여 1인 또는 그 이상의 전문가를 임명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절차 과정에서 제기한 환경, 보건, 안전 또는 그 밖의 과학적 사안에 관한 사실 문제에 대하여 자신에게 서면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38조 잠정적 보호조치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소유나 통제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포함하여, 분쟁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재판소의 관할권이 완전히 효력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잠정적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압류 명령을 내리거나 제10.20조 또는 제10.21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이 조의 목적상 명령은 권고를 포함한다.

제10.39조 최종판정

1. 중재판정부가 당사국에 불리한 최종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판정만을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

- 가. 금전적 손해배상 및 적용 가능한 이자 지불, 그리고,
- 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분쟁 당사국이 원상회복을 대신하여 금전적 손해배상 및 적용 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 한다.

2. 중재판정부는 또한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 지불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청구가 제10.21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 가. 재산의 원상회복 판정은 그 원상회복이 기업에 대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 나.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 지불 판정은 그 합계가 기업에 지불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 다. 판정은 적용가능한 국내법에 따른 보상에 대해 어떠한 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판정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한다.

4. 중재판정부는 당사국에게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

제10.40조 판정의 최종성 및 집행

1. 중재판정부에 의해 내려진 판정은 분쟁 당사자들간 그리고 당해 사안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갖는다.

2. 제3항 및 잠정판정에 대한 적용가능한 재심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분쟁 당사자는 지체없이 판정을 준수하고 따른다.

3. 분쟁 당사자는 다음 시점 이전에 최종판정의 집행을 요구할 수 없다.

-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최종판정의 경우,
 - (1) 최종판정이 내려진 일자로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어느 분쟁 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이나 취소를 요청하지 아니할 때, 또는
 -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된 때, 그리고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추가절차규칙이나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른 최종판정의 경우,

- (1) 최종판정이 내려진 일자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보류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차수하지 아니할 때, 또는
-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 보류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였거나, 또는 허용하였으나 더 이상의 상소가 부재할 때.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제공한다.

5. 일방 분쟁 당사국이 최종판정을 준수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는 중재 당사자였던 투자자의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제19.6조에 따른 패널을 설치한다. 이를 요청한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에서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최종판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한다는 결정, 그리고
- 나. 당해 당사국이 최종판정을 준수하거나 따르도록 하는 권고

6. 분쟁 투자자는 제5항에 따른 절차가 취해졌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협약 또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의 집행을 추구할 수 있다.

7. 이 절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1조의 목적상 상업적 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0.41조 일반규정

청구의 중재회부 시점

1. 이 절에 따른 청구의 중재는 다음과 같은 시점에 회부된 것이다.

-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재요청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추가절차규칙 제3부제2조에 따른 중재통지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또는
- 다. 유엔국제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라 통보된 중재통지가 분쟁 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문서의 송달

2. 당사국에 대한 통지서와 그 밖의 문서는 부속서 10.41(2)에 지정된 그 당사국내 장소로 송부한다.

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른 수령

3. 이 절에 따른 중재에서 당사국은 분쟁 투자자가 보험이나 보증 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의 전부나 일부를 보상 또는 배상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항변, 반론, 상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다.

판정의 공표

4. 판정의 공표에 관해서는 부속서 10.41(4)가 당사국에게 적용된다.

제10.42조 제외

일방 당사국이 제20.2조에 따라 취한 다른 조치에 대하여 이 절 또는 제19장의 분쟁해결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해함이 없이, 일방 당사국이 제20.2조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내에서의 투자의 취득 또는 그 투자자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로 하는 결정은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절 -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위원회

제10.43조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이에 부속서 10.43에 따라 각 당사국의 대표자로 구성된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2.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위원회는 최소한 일년에 1회 이상 개최되거나 일방 당사국 또는 자유무역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된다.
3.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위원회는 특히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 가. 이 장과 제11장의 시행 및 운영의 감독,
 - 나. 투자 및 국경간 서비스에 관한 양국의 관심사항 논의, 그리고
 - 다. 다른 국제회의에서 논의중인 투자 및 국경간 서비스 관련 주제의 검토.

부속서 10.9.6

1. 대통령령 제600호(1974) 대외투자법은 칠레의 자발적이고 특수한 투자제도이다.
2. 칠레로의 자본 도입에 관한 일반적 제도 대신에, 잠재적 투자자는 대외투자위원회에 대통령령 제600호에 규정된 제도를 적용받고자 신청할 수 있다.
3. 이 장에 포함된 의무와 약속은 대통령령 제600호 대외투자법, 법 제18657호 외국자본투자기금법, 동 법률들의 지속이나 신속한 개선, 동 법률들의 개정, 또는 칠레에 의해 미래에 채택될 수 있는 모든 특수하고 또는 자발적인 투자제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명확히 하기 위해, 칠레의 대외투자위원회는 대통령령 제600호와 법 제18657호를 통한 투자 신청을 기각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추가적으로 대외투자위원회는 대통령령 제600호와 법 제18657호의 외국투자의 조건을 규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부속서 10.11

제10.11조의 의무와 관련하여, 칠레는 다음의 권리를 유보한다.

1.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한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전부나 일부 매도, 또는 투자의 부분적인 또는 완전한 청산으로 인한 대금이 칠레로부터 송금될 때 다음을 넘지 아니하는 기한까지는 송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존의 요건을 유지할 권리
 - 가. 대통령령 제600호 대외투자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의 경우, 칠레로 송금된 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 또는
 - 나. 법 제18657호 외국자본투자기금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의 경우에 칠레로 송금된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
2. 칠레내의 외국투자에 대한 일반제도에 더하여 미래의 특별하고 자발적인 투자프로그램을 이 부속서에 합치하게 수립하는 조치를 채택할 권리. 다만,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칠레로의 이전일자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한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전부나 일부 매도, 또는 투자의 부분적이거나 완전한 청산에서 비롯되는 대금이 칠레로부터 송금되지 아니하도록 규제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3. 칠레 중앙은행이 통화안정 그리고 국내 및 대외 지불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칠레 중앙은행 조직법(법 제18840호)이나 다른 법령에 합치하는 조치를 유지하거나 채택하는 권리. 이 목적상 칠레 중앙은행은 통화와 신용의 공급, 그리고 국제신용 및 외환 운영을 규율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칠레 중앙은행은 또한 통화, 신용, 재정 및 외환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칠레로의 또는 칠레로부터의 예치, 투자 또는 신용이 준비금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이 칠레로의 또는 칠레로부터의 경상지불과 이전(자본이동) 및 이러한 지불과 이전에 관련된 거래에 대한 제한과 한계를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위에도 불구하고 법 제18840호 2번 제49조에 따라 칠레 중앙은행이 적용할 수 있는 준비금 요건은 송금되는 액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10.20

1.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는 타방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실현된 투자와 관련하여 자신을 위해서나 기업을 대신하여 이 장의 제3절에 따른 청구만을 제기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관련 의제를 다루는 양자, 지역 또는 다자간 협상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 협정이 발효한 후 1년 이내에 이 장 3절의 적용범위 및 적용한다고 판단되는 3절의 여타 조항들의 개정에 관해 협상한다.

부속서 10.41(2)

문서의 송달

칠레

칠레에 대한 제3절에 따른 통지 및 다른 문서의 송부 장소는

칠레 산티아고 모란데 441

칠레 공화국 외무부 법무국

한국

한국에 대한 제3절에 따른 통지 및 다른 문서의 송부 장소는

대한민국 과천 정부청사

대한민국 법무부 국제법무과

부속서 10.41(4)

판정의 공표

칠레

칠레가 분쟁 당사국인 경우에 칠레 또는 중재의 당사자인 분쟁 투자자는 판정을 공표할 수 있다.

한국

한국이 분쟁 당사국인 경우에 한국 또는 중재의 당사자인 분쟁 투자자는 판정을 공표할 수 있다.

부속서 10.43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위원회의 구성

제10.43조의 목적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철례의 경우, 외무부 국제경제총국 국장 또는 그 승계인
2.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국장 또는 그 승계인